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. 6. 14 선고 2020가단122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6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## 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890/1008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29.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59/504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890/100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7. 6. 12. 접수 제8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59/50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0. 3. 12. 접수 제3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6. 12. 2.경 D과 사이에 차량금액 19,890,000원인 (차량번호 1 생략) 아반떼 AD(이하 ‘이 사건 차량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월 대여료 443,400원, 대여기간 2016. 12. 2.부터 2021. 12. 1.까지 60개월로 정한 렌터카 약정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D은 2017. 5. 14.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문림마을 1교차로 삼각지로 돌진하는 사고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 한다)를 일으켰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, 주식회사 E 부산지점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18,092,083원으로 예상된다는 견적서를 받은 다음, 2017. 5. 31.경 그 수리비가 미상각잔액 18,237,162원의 99.2%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26,109,539원으로 산정하였다. D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잔여기간 동안 분납할 것을 요청하였다.

라. D은 2017. 5. 29.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890/1008 지분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제1차 증여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하였고, 2017. 6. 12. 이 사건 제1차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7. 6. 12. 접수 제801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또한 D은 2020. 3. 9.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59/504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제2차 증여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제2차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하였고, 2020. 3. 12. 이 사건

제2차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0. 3. 12. 접수 제349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D은 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17. 5. 18.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. 2017. 5. 18.을 기준으로 한 D의 소극재산은 F회사에 대한 12,341,000원의 대출금채무, G조합에 대한 9,000,000원의 대출금채무, H카드에 대한 1,500,000원의 대출금(현금서비스)채무, I카드에 대한 680,000원의 대출금(현금서비스)채무, J카드에 대한 400,000원의 대출금(현금서비스)채무, 앞서 본 원고에 대한 26,109,539원의 손해배상금채무 합계 50,030,539원(= F회사에 대한 대출금 12,341,000원 + G조합에 대한 대출금 9,000,000원 + H카드에 대한 대출금 1,500,000원 + I카드에 대한 대출금 680,000원 + J카드에 대한 대출금 400,000원 +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26,109,539원)이었다.

바. D은 이 사건 제2차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차 증여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가 있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, 19, 20, 21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(2017. 5. 14.)에 성립된 것이므로, 위 채권은 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### 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#### 1) 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, 그 가액은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인 44,800,000원<sup>1)</sup> 과

같다고 추인되며, 한편, 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 무렵 D의 소극재산은 합계 50,030,539원이므로, 이 사건 제1차 증여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D이 이 사건 제1차 증여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## 2) 이 사건 제2차 증여계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제2차 증여계약은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차 증여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## 다.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, 2차 증여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고 소유의 재산인데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),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8068 판결).

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6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D은

2015. 9. 16.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 사건 제1, 2차 증여부동산과 동일하다)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9. 16.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. 17.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. 한편,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되고,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안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.

설령 D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다음과 같은 이유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. 즉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(을 제2호증)에 매수인 명의는 D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D 명의로 마쳐진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보아야 한다. 이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데, 그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, 매도인인 K이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, 을 제5호증의 기재, 증인 K, L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은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, 2차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제1차 증여부동산에

관한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7. 6. 12. 접수 제8015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2차 증여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0. 3. 12. 접수 제349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지원

별지

1) 매매계약서(을 제2호증)에는 매매대금이 22,000,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을 제1,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, 실제 매매대금을 44,800,000원으로 인정한다.